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05일
한국나노기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수요증가로 해당 분야 모듈화 및 시스템화 등 제품화 시 어셈블리 및 테스트 등을 지원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1차) 2025. 4월 ~ 7월, (2차 8~11월 예정)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구 분		도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선정 수
①기술개발 지원	초기	10,000천원	1,000천원 이상 (현금 50% + 현물 50%)	11,000천원 이상	5개사 내외
	심화	40,000천원	10,000천원 이상 (현금 50% + 현물 50%)	50,000천원 이상	5개사 내외
②기술컨설팅 지원		500천원(회당)	-	-	예산범위 내 상시접수

* 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제외

2. 신청자격

-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②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근거 : 중소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3.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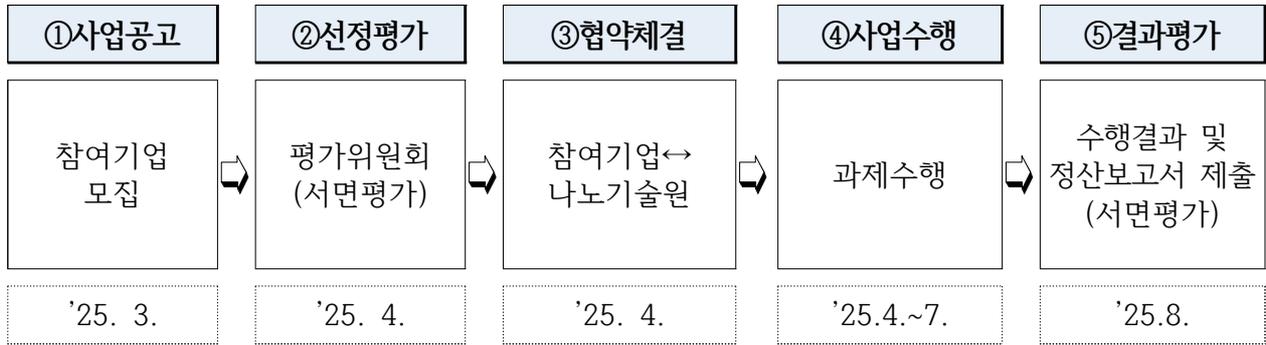
① (초기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단계에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개선 및 시작품(Prototype)제작, 교육 및 입주 연구실 등 지원

② (심화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공정(상품화) 단계에서 제조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 교육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구성)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 경비,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비 항목 내 자율적 구성

③ (기술컨설팅 지원)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결 방향성 제시를 통한 기술애로 분석 및 해결

□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3월 5일(수) ~ 4월 1일(화) 18:00까지

※ 「OSAT 기술컨설팅 지원」의 경우 상시 모집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류 E-mail(baeki.chung@kanc.re.kr) 제출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

주관기관	전 화	E-mail
한국나노기술원 대외협력처	031-546-6530, 6521	baeki.chung@kanc.re.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선정방법

□ 평가방법

- (기술개발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기술개발 지원)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술컨설팅 지원) 기술컨설팅의 필요성, 시급성, 전문가 매칭 가능성, 초기 및 심화 기술개발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구분	평가지표	배점
추진계획 및 적정성 (30)	○ 추진계획(또는 입주계획) 적정성 및 목표수준 등의 구체성	10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	10
	○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연계(나노팜 활용 등) 가능성	10
기술성 (30)	○ 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구현의 현실성	10
	○ 개발 기술의 타기술(경쟁자) 대비 독창성·차별성	10
	○ 기술 보유 현황 (인증, 특허 등) 및 획득 가능성	10
시장성 및 창출효과 (40)	○ 개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진출 파급효과	10
	○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및 고용효과	10
	○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수출가능성	10
	○ 수요고객 연계 및 투자가능성	10
합 계		100

※ 우대사항(가점)

세부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 10년 이내 반도체 팹리스 창업기업 ◦ 한국나노기술원 나노팝 활용 또는 기술이전 경험(예정)자 	각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9세 미만 청년 창업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최근2년) ◦ 청년창업사관학교(청년 튜터링100),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추천기업 ◦ 재기 1인 창조기업(폐업 사실 확인서 확인) 	각1점 (최대3점)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70점 미만 시 탈락)
- 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통보 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
 - OSAT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선정기업은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에 가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전용통장으로 先 지급됨(단,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발급 수수료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해야 함(사업비로 불인정)
-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초기 기술개발만 해당)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년 단위 입주협약 체결(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심사를 통해 연장가능-최대 2년) * 별도 협약 체결
 - 단, 타 센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전체 입주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담매니저의 상시상담 및 성과관리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분야별 네트워킹 등) 지원

□ 지원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가. 부도기업
 -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다.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 라.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 바.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5.1.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
 - ※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사업 취소 등 제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